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파일공유사이트, 저작물 1건마다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4월 10일경부터 2010년 9월 21일경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A), 2010년 4월 23일경부터 2010년 8월 17일경까지는 A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이트(B)를 운영하면서 위 각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수십만 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1)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별로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①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② 저작권법 제140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위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2)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로 다른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

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개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지적재산권]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정보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 있는지

1. 사실관계

낙뢰(落雷)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인 순간정전보상기(VSP; Voltage Sag Protector)를 제조하는 甲회사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사용자가 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서 ‘VSP 엔티씨’라는 표제가 나타나고,

그 아래 줄에 '서지보호기, 순간정전보호상기, 뇌(雷)보호시스템'¹ 이라는 상품의 종류가 표시되며, 그 다음 줄에 甲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고, 인터넷 사용자는 그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VSP 엔티씨'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해 甲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乙회사는 지정상품을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으로 하여, 이미 'VSP'라는 등록상표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甲회사는 이미 구입한 'VSP' 키워드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중 그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VSP 엔티씨'가 乙회사의 등록상표('VSP')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VSP 엔티씨'가 인터넷 사용자들을 甲회사의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VSP'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요한 논거로 甲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논트립(Nontrip)', '딤프리(Dipfree)', '새그프리(Sag Free)' 등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만 표시되어 있고 'VSP 엔티씨'가 붙은 상품은 표시된 것이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표장[VSP 엔티씨]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甲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언급한 논거에 대해서는, 실제 홈페이지의 내용은 'VSP 엔티씨'가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자체에서 이미 상

¹ 서지보호기는 급격한 과전압(surge)이 생겼을 때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기계를 말하고, 순간정전보호상기 및 뇌(雷)보호시스템은 낙뢰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표로 사용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VSP 엔티씨'가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VSP'와 'VSP 엔티씨'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 약어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VSP'부분은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엔티씨'부분은 'VSP'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